

보건산업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보건산업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 산학협력, 인력양성, 장비활용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보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호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2. 힐링통합센터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운영 지원
3.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4.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사업 수행
5. 기술지도,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사업 수행
6. 국내·외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
7. 산업체 기술 인력의 수탁교육
8.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
9. 평생교육원 과정 운영지원
10.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

제 2 장 조 직

제 4조 (조직) 연구소에는 다음 조직을 둘 수 있다.

1. 치유프로그램팀
2. 메뉴개발 및 레시피개발팀
3. 기능평가팀
4. 대외협력팀

제 5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 1명
2. 대외협력위원장 : 1명
3. 사업 및 연구팀장 : 약간 명
4. 연구원 : 약간 명
5. 행정보조원 : 약간 명
6. 조교 : 약간 명

제 6조 (임원의 임무, 임명, 임기)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소참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외협력위원장, 사업 및 연구팀장은 관련 부서의 연구와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연구원, 행정보조원 및 조교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 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 사업방향의 설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기타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대외협력위원장, 각 연구팀장, 학내 외 전문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경제단체의 장, 관련 산업계의 인사 및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구소의장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재 정

제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
2.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
3.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4.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제10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 장 폐 소

제11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고

제12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제 7 장 보 칙

제13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